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Q1-1.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내용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며,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됩니다.
- 본 공고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대학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대학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기업 참여 불가)

Q1-2. 하나의 기관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참여 가능한가요?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과제에서 2개 이상의 역할을 동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표. 동일기관 과제구성 가능/불가능 사례별 예시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공고문 내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참고. 신청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표. 동일기관 판단기준 사례별 예시

	주관	공동	가능 여부	비고
사례1	한국대학교	한국대학교 병원	가능	- 별도의 법인을 갖고 신청자격에 따른 기관
사례2	한국대학교	한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불가능	- 산학협력단은 혁신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님
사례3	한국대학교	한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불가능	- 별도의 법인을 가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사례4	한국대학교	한국대학교 00분원	가능	- 단, 별도의 법인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

Q1-3. 기업은 이번 과제에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 본 한-캐나다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은 학술·기초 연구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영리기관)의 참여는 전면 제한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대학에 한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대학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만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전체 과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4. 3책 5공이 뭔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책'이 아닌 '공'으로 계산하며, 학생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은 '공'으로 계산됩니다.
- 참고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은 '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외 조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Q1-5.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 관련 규정의 '3책 5공'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제 선정 시 공동연구책임자가 3책 5공을 초과한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3책 5공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제 선정이 취소됩니다.
- 본 공고에서는 1개의 (주관)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타 부처 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본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타 부처 사업 관련 내용은 담당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3책 5공은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1-7. 과제 신청 시 최소 계상률 제한이 있나요?

- 혁신법 시행으로 종전 참여율의 개념이 인건비 계상률로 변경되면서, 최소 계상률(구 참여율)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 3책 5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 계상률 0%도 참여 가능합니다. (학생연구원은 0% 참여 지양)

Q1-8.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IRB 승인은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Q1-9. 한국 측과 캐나다 측 연구책임자를 각각 몇 명씩 두어야 하나요?

- 본 공고는 한국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연구책임자 2인 이상으로 연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즉 한국측 1인, 캐나다측 1인 이상이 필요하며, 한국측 연구팀은 학·연 컨소시엄(주관 대학 + 공동 국공립·출연연) 구성이 가능합니다.

Q1-10. 한국(IRIS)과 캐나다(NSERC) 양쪽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네. 한국 측 주관연구책임자는 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서류를 제출하고, 캐나다 측에는 연구계획서 요약문 및 STRAC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양측 모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한쪽이라도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 관련

Q2-1.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Q2-2.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Q2-3. 연구자 신청기간과 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자 신청 기간: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연구수행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 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 연구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연구수행기관 승인 가능
 - ※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해 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 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Q2-4.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별첨서류의 '신청마감일' 역시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2-5.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주관과제에서 제출하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공동과제 및 위탁과제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과제 및 위탁과제의 연구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Q2-6.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대사업명: **창의적 인재육성**
- 중사업명: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R&D)**
- 소사업명: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 조성**

Q2-7.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본 공고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와 무관하게 17페이지 이내(참고문헌, 연구책임자 이력사항(CV) 제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계획서 본문(PART2)은 영문으로만 작성 및 제출합니다(향후 결과보고서는 한글 요구 가능).

Q2-8. 과제 신청 시 기관담당자의 화면에서 신청한 과제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 신청하신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정상적으로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속하신 기관의 기관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담당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권한을 발급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권한이 없을 경우 IRIS 콜센터(1877-2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9. 별첨서류 중 STRAC Attestation Form(별첨5)은 무엇이고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캐나다 정부의 '민감 기술 연구 및 우려 대상 소속·제휴 관계에 관한 정책 (STRAC Policy)'에 따라, 본 과제에 참여하는 한국 측 연구자 전원(주관·공동·위탁 모두 해당)이 각자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약서입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Q3-1.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인가요? 총 연구개발비인가요?

- 공고문 및 과제 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과제별로 지원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입니다.
-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Q3-2.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3.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접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율 ≤ 간접비

-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조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준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기관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Q3-4.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는 뭔가요?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에 따른 비목으로서,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연구개발기관 관련

Q4-1.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과제에 지급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책임자와 협의 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공동연구개발과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Q4-2.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 ex)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
- ex)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로 동시에 수행
-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합니다.

Q4-3. 같은 연구개발기관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가능한지?

- ex) A기관이 B과제와 C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 ex) A기관이 B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C과제에서 위탁연구기관으로 수행
- 다른 연구개발과제이므로 수행 가능합니다.

Q4-4. 해외기관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으로 과제 수행이 가능한지?

- 해외기관은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Q4-5.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공동연구개발과제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공동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은 과제 제안요구서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기준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6.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동일 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Q4-7.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Q4-8. 공동연구개발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공동연구개발과제는 별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별첨자료는 주관연구과제에서 취합하여 제출합니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위탁과제) 관련

Q5-1. 위탁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 위탁과제는 연구내용, 과제 추진 방안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단, 사업 및 연구주제에 따라 위탁과제 운영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만이 생성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는 생성이 불가합니다.
- 위탁과제를 운영하시려면 과제 신청 시 위탁연구개발비를 편성하시고, 별도로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주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위탁과제 필요성 및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 평가 시 위탁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칩니다.
- 평가 과정에서 위탁과제 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2.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주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text{위탁연구개발비} \leq (\text{직접비} - \text{위탁연구개발비} - \text{국제공동연구개발비} - \text{연구개발부담비}) \times \frac{40}{100}$$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집행하는 직접비를 기준으로 계산

- 한 주관과제 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5-3.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동일 기관에서 위탁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Q5-4.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위탁과제는 별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별첨자료는 주관과제에서 취합하여 제출합니다.